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1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박 정 · 소병훈 · 허종식
김정호 · 허 영 · 김주영
김태선 · 박홍배 · 강득구
안호영 · 이용우 · 정일영
김남근 · 최민희 · 박지원
이학영 · 홍기원 · 김성희
이건태 · 박용갑 · 황명선
최혁진 · 민병덕 · 전진숙
이용선 · 김병주 · 황정아
김용만 · 전현희 · 장종태
권향엽 · 정진욱 · 조인철
이수진 · 박선원 · 이훈기
의원(36인)

제안이유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선 기후테크 산업화와 이의 확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함. 또한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테크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기반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의 제품·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테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실현가능성·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 아울러, 기후테크 전략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함. 또한 연구개발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시책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자.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행사 개최, 현지 진출 자문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1조).
- 차.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

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복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테크 육성과 기후테크기업 지원 및 혁신기업 발굴을 통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와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의 순환경제기술

다. 그 밖에 기후위기 등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기후테크 산업”이란 기술개발 및 기후테크 활용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후테크 전략사업”이란 기후테크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기후테크기업”이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기후테크 혁신기업”이란 기후테크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혁신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
6. “기후테크성과”란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도 및 이와 관련된 잠재적 효과를 말한다.
7. “기후테크가치평가”란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기후테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후테크기업, 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테크기업 지원,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 혁신기업의 육성 및 생태

계 구성에 필요한 자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기업 지원, 혁신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후테크기업과 혁신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이후에도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후테크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혁신기업의 창업, 실증·사업화 지원 및 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
6. 기후테크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조사·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생태계의 조성 및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기후테크에 관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후테크기업 및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의 조사·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후테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기후테크 관련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조사
2.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기후테크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지원
5.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후테크기업의 기후테크성과 측정·관리를 위한 기후테크가치평가의 개발 및 운용

7. 기후테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업
8.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그 밖에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테크기업 지원,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기후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기후테크 관련 현황조사
2.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이행점검 및 분석 지원
3. 기후테크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
4. 지역 내 기후테크기업의 기후테크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
5. 제23조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24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30조에 따른 일괄처리의 신청과 사후관리 지원

6.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후테크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테크성과의 산정을 위한 기후테크가치평가 제도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매년 기후테크가치평가를 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은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테크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시행, 평가의 신청,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제1절 혁신기업 발굴 지원

제10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기후테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4.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은 사업화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전략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술의 구현·확산에 필수적인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구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전략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 및 운영실적(Track Record) 확보 지원
3. 신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에 따르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보증 지원
4.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반의 조성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용 책임보험 가입 및 컨설팅 지원 등
6. 제24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등 혁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사업의 지정 기준,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실적
2.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실적과 환수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절차와 비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14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혁신기업을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업개요
2. 조합원의 구성 및 출자계획
3. 투자대상 혁신기업의 선정기준 및 투자계획
4. 수익의 배분계획
5.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상법」 중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금융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혁신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후테크 산업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상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기금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제3절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테크 관련학과를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산업 전문인력 확대 및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 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은 기후테크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특성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후테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석
4.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5.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자문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제4장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22조(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2. 기후테크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후테크 임시허가·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심의 대상이 되는 기후테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제24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기후테크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을 정하거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실증 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등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⑦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5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기후테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 및 제품·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등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자는 사업 수행 전에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

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기후테크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등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7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등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

관의 장은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기술등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증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실증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

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기술 등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시허가)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기후테크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프로젝트 수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2. 해당 기술등의 파급력 및 이용자의 편익

3. 기술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등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후테크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일괄처리) ① 기후테크기업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 심사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기업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산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 기후테크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서비스 홍보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시설
2.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서비스 인증 및 실증화 시설
3.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집적단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기업 및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공공수요 연계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테크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테크기업, 혁신기업,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특

성화 교육기관, 연구기관, 제14조에 따른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을 포함한 투자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지원센터 등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과 제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3. 제2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에 따른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후테크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기후테크가치평가와 평가기관,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벤처투자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벤처투자조합 중 기후테크 관련 투자를 주로 하는 조합은 제14조에 따른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